|  |  |  |
| --- | --- | --- |
| **중국 청정발전기제 기금 관리방법**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외교부,  과학기술부, 국가환경보호부, 농업부,  중국기상국 령 제59호  《중국 청정발전기제 기금 관리방법》이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외교부, 과학기술부, 환경보호부, 농업부, 중국기상국의 부(위원회,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고 아울러 국무원의 비준을 얻었기에 이에 공표하며,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붙임: 중국 청정발전기제 기금 관리방법  2010년 9월 14일  **중국 청정발전기제 기금 관리방법**  **제1장 총 칙**  **제1조** 중국 청정발전기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의 자금적립, 관리 및 사용을 강화하고 규율하여 기금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기금은 국가의 비준을 받고 설립한, 사회적 기금모델에 따라 관리하는 정책성 기금을 가리킨다.  **제3조** 기금의 취지는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 업무를 지원하고 경제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는데 둔다.  **제4조** 기금의 적립, 관리 및 사용은 공개, 공정, 안전, 효율, 전문사용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2장 관리기구 및 직책**  **제5조** 기금 관리기구는 기금심사이사회와 기금관리센터로 구성한다.  **제6조** 기금심사이사회는 기금사무와 관련한 부(部)간 의사기구이다.  기금심사이사회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외교부, 과학기술부, 환경보호부, 농업부 및 기상국의 대표로 구성한다.  기금심사이사회는 주석과 부주석을 두며,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에서 각기 대표를 임명하여 그 직책을 수행하게 한다.  기금심사이사회는 아래의 사항을 심사한다.  (1) 기금의 기본관리제도  (2) 자금사용 연도계획을 포함한 기금의 발전전략계획  (3) 기금 기부프로젝트와 중대 유료사용 프로젝트의 신청  (4) 기금의 연도 재무 수지예산과 결산  (5) 기금의 기타 중대 업무사항.  전 항에 열거한 사항은 기금심사이사회의 심사를 거쳐 일치한 의견을 달성한 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는다.  **제7조** 기금관리센터는 기금의 일상 관리기구로서 구체적인 기금의 적립, 관리 및 사용업무를 책임지고 처리하며, 재정부의 관리를 받는다.  **제8조** 기금관리센터는 아래의 직책을 수행한다.  (1) 기금의 기본관리 제도를 기안하고 기금의 구체적인 운행 관리규정을 제정  (2) 기금 자금을 적립  (3) 기금자금을 관리하고 기금의 유료사용과 재테크활동을 조직 실시  (4) 기금의 연도 재무 수지예산과 결산을 편성 및 조직 실시  (5) 기금이 지원하는 프로젝트의 운행을 감독 관리  (6) 기금심사이사회에 기금의 중대 업무사항을 보고  (7) 기금의 취지에 부합되는 기타 활동을 전개.  **제3장 기금의 적립**  **제9조** 기금 원천은 아래와 같다.  (1) 청정발전기제프로젝트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절감량을 양도하여 취득한 수입 중 국가의 소유부분  (2) 기금의 운영수입  (3) 국내외 기구, 조직 및 개인의 증여  (4) 기타 원천.  **제10조** 이 방법이 배출 절감량이란 국가의 비준을 받고 청정발전기제프로젝트를 통해 양도한 온실가스 배출 절감량을 가리키며, 배출 절감량의 수입이란 배출 절감량을 양도하여 취득한 수입을 가리킨다.  배출 절감량 수입은 국가와 청정발전기제프로젝트를 실시하는 기업(이하 프로젝트 건설업자)이 규정한 비율에 따라 소유한다. 배출 절감량 수입 중에서 국가 소유부분(이하 국가수입이라 함)은 전액 기금에 산입시킨다.  **제11조** 국가수입은 기금관리센터가 프로젝트건설업자 또는 배출 절감량 양도계약의 약정에 따라 배출 절감량 구매자로부터 수취한다.  프로젝트건설업자는 배출 절감량 수입을 취득한 15일 근무일 이내에 규정한 비율에 따라 지정한 계좌에 국가수입 부분을 이체해야 한다.  **제12조** 국가수입은 배출 절감량 양도계약이 약정한 화폐종류로 수취한다.  배출 절감량 양도계약에서 국가수입을 외국통화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인민폐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센터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프로젝트건설업자는 수입을 취득한 15일 근무일 이내에 인민폐로 지급해야 하며, 환율은 환결제 당일의 현찰 매입가격에 준한다.  **제13조** 배출 절감량 양도계약은 프로젝트건설업자와 배출 절감량 구매자 지간에 체결한다.  프로젝트건설업자는 배출 절감량 양도계약이 효력을 발생한 15일 근무일 이내에 계약서 부본, 영업집조 사본, 계약 쌍방의 연락인 및 연락방식을 기금관리센터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프로젝트건설업자는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근무일 이내에 기금관리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제14조** 프로젝트건설업자가 국가수입을 유예지급, 적게 지급 또는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처벌한다.  **제4장 기금의 사용**  **제15조** 기금의 사용은 기부, 유료사용 등 방식을 취한다.  기금은 기부방식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능력의 건설을 강화하고 공중의 기후변화 대응의식을 높이는 관련 활동을 지원한다.  기금은 유료사용방식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수익을 얻는 데 유리한 산업 활동을 지원한다.  기금은 은행예금 또는 국채, 금융채, 사채 구매 등 형식을 통해 재테크활동을 전개한다.  **제16조** 기금지출에는 업무지출과 기본관리비용 지출이 포함된다.  업무지출에는 기부지출과 유료사용 프로젝트 개발비용 지출이 포함된다.  기부기금의 연간 지출규모는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의 실제 업무수요에 따라 확정한다.  이 방법이 유료사용 프로젝트 개발비용이라 함은 기금 유료사용 프로젝트의 선별, 조사, 평의, 입안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가리킨다. 유료사용 프로젝트 개발비용은 프로젝트 사용금액의 일정 비율에 따라 인출한다.  이 방법이 기본관리비용 지출이라 함은 기금의 적립, 관리, 사용 과정에서의 일상 관리비용을 가리키며, 여기에는 청정발전기제프로젝트 일상관리비용이 포함된다. 기본관리비용 지출은 기금의 직전 연도말 순자산액의 일정 비율에 따라 인출한다.  유료사용 프로젝트 개발비용과 기본관리비용 지출의 구체적 인출비율은 기금심사이사회가 별도로 규정한다.  **제17조** 기금관리센터는 기금 사용에 따라 리스크통제를 실시한다.  기금은 그 취지를 어기는 찬조 및 증여 지출에 사용하지 못하며, 증권, 증권류 투자기금, 부동산 및 선물 등 금융파생제품의 투자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18조** 기금과 기금관리센터 재무장부는 별도로 설치하고 채산해야 하며, 예산과 결산 관리를 실시한다.  재정부는 기금 재무관리 방법을 제정하며, 기금의 사용상황과 회계기록에 대하여 감독 검사를 실시한다.  **제5장 기부 프로젝트 관리**  **제19조** 기부금은 주로 아래 사항의 지원에 사용한다.  (1)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정책연구와 학술활동  (2)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국제협력활동  (3) 기후변화 대응능력의 건설 강화를 위한 교육활동  (4) 공중의 기후변화 대응의식 제고를 위한 선전, 교육활동  (5) 기금의 취지 성취를 위한 기타 사항.  **제20조** 기부프로젝트 신청인은 중국 경내에서 기후변화 대응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고 일정한 연구나 교육능력이 있는 유관기구이어야 한다.  **제21조** 기부금을 신청 시에는 프로젝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부프로젝트 신청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다.  (1) 신청인의 기본상황  (2) 프로젝트 배경자료  (3) 프로젝트 목표  (4) 프로젝트의 주요내용과 활동  (5) 프로젝트의 주요 산출  (6) 프로젝트의 집행진도 안배  (7) 신청 자금액수와 예산배정  (8) 기타 관련 내용.  **제22조** 기부프로젝트신청서는 국무원 유관부서나 성급 발전개혁부서(이하 프로젝트 조직신고단위라 함)를 통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송부한다.  **제23조** 국무원발전개혁위원회는 기부프로젝트에 대한 평가를 조직 실시한다.  기부프로젝트의 평가결과는 기금심사이사회에 보고하여 심사를 받고 일치한 의견을 달성한 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는다.  **제24조** 기부프로젝트는 프로젝트 조직신고단위가 조직 실시한다.  **제25조** 기부프로젝트는 계약관리를 실시하며, 계약 중에 각방의 책임, 권리, 의무 및 위약 시의 처벌방법을 명확히 규정한다.  기부프로젝트 계약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프로젝트신고단위, 기금관리센터, 기부프로젝트 신청인이 공동으로 체결한다.  **제26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기금관리센터는 프로젝트 조직신고단위와 회동하여 기부프로젝트에 대한 감독검사와 검정 검수를 실시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는 규정위반 행위를 처리, 처벌한다.  **제27조** 기부프로젝트가 연구 또는 기타 성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부프로젝트 계약에 관련 권익의 귀속을 약정해야 한다.  **제6장 유료사용 프로젝트 관리**  **제28조** 기금의 유료사용은 아래의 방식을 취한다.  (1) 지분권 투자  (2) 위탁 대출  (3) 융자 담보  (4) 국가가 비준한 기타 방식.  기금이 지분권투자, 위탁대출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경우 그 연간 누계 금액은 직전 연도말 순자산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구체적인 비율은 기금심사이사회가 별도로 규정한다.  기금이 지분권투자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경우 투자대상에 대한 지분 지배지위를 차지할 수 없으며, 투자 지분권의 퇴출은 공개, 공정 및 시장화 원칙에 따라 그 퇴출방식과 가격을 확정해야 한다.  기금이 융자담보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경우 그 담보액은 기금의 연도예산이 확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9조** 유료사용 프로젝트신청인은 중국 경내에서 기후변화 경감, 적응 관련 분야 업무에 종사하는 중국자본기업, 중국자본이 지배지위를 차지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제30조** 유료사용 프로젝트신청인은 기금관리센터에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류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다.  (1) 프로젝트신청서  (2) 프로젝트 사업성보고서  (3) 최근 3년간 기업의 경영상황  (4) 기업 영업집조 부본  (5) 기타 관련 자료.  **제31조** 기금관리센터는 기금의 유료사용 프로젝트의 선별, 평가를 조직한다.  중대 프로젝트에 속하는 경우에는 기금심사이사회의 심사를 거쳐 일치한 의견을 달성한 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의 비준을 받으며, 비중대 프로젝트에 속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센터가 규정한 절차에 따라 심사 비준하며, 비준 후 15일 근무일 이내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전 항이 중대 프로젝트라 함은 단일 프로젝트가 신청하는 기금자금이 7,000만 위안 이상(7,000만 위안 포함)의 유료사용 프로젝트를 가리킨다.  **제32조** 국가의 투자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프로젝트 심사비준, 인허가 또는 등록비치 수속을 해야 하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프로젝트가 심사비준, 인허가 또는 등록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기금은 프로젝트에 자금을 제공하지 못한다.  **제33조** 기금관리센터는 유료사용 프로젝트의 조직 실시, 감독검사 및 검정검수를 조직한다.  기금 유료사용으로 형성된 각종 자산과 권익은 국가의 관련 재무규장 제도에 따라 관리한다.  **제7장 부 칙**  **제34조** 기금 및 그 관리센터는 국가 감사기관의 법적 감사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35조** 기금심사이사회의 비준을 거쳐 기금관리센터는 회계감사기구에 기금수지규모, 기금잔고, 기금운행상황 및 기금관리센터의 지출상황에 대한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36조** 이 방법은 반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 **中国清洁发展机制基金管理办法**  财政部、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外交部、科学技术部、国环境保护部、  农业部、中国气象局令第59号  　《中国清洁发展机制基金管理办法》  已经财政部、国家发展改革委、外交部、  科技部、环境保护部、农业部、中国气象  局部（委、局）务会议通过，并已经国务  院批准，现予公布，自公布之日起施行。  附件：中国清洁发展机制基金管理办法  　　　　　　　　　　　　　　　　　　　　　　　　 二〇一〇年九月十四日    **中国清洁发展机制基金管理办法**  **第一章 总 则**  **第一条**为加强和规范中国清洁发展机制基金（以下简称基金）的资金筹集、管理和使用，实现基金宗旨，制定本办法。  **第二条**基金是由国家批准设立的按照社会性基金模式管理的政策性基金。  **第三条**基金的宗旨是支持国家应对气候变化工作，促进经济社会可持续发展。  **第四条**基金的筹集、管理和使用，应当遵循公开、公正、安全、效率、专款专用的原则。  **第二章 管理机构及其职责**  **第五条**基金的管理机构由基金审核理事会和基金管理中心组成。  **第六条**基金审核理事会是关于基金事务的部际议事机构。  基金审核理事会由国家发展改革委、财政部、外交部、科技部、环境保护部、农业部和气象局的代表组成。  基金审核理事会设主席和副主席，分别由国家发展改革委和财政部派出代表履行职责。  　　基金审核理事会负责审核下列事项：  （一）基金基本管理制度；  （二）基金发展战略规划，包括资金使用年度计划；  （三）基金赠款项目和重大有偿使用项目申请；  （四）基金年度财务收支预算与决算  （五）基金其他重大业务事项。  前款所列事项经基金审核理事会审核并取得一致意见后，报国家发展改革委、财政部批准。  **第七条**基金管理中心是基金的日常管理机构，具体负责基金的筹集、管理和使用工作，由财政部归口管理。  **第八条**基金管理中心履行下列职责：  （一）起草基金基本管理制度，制定基金具体运行管理规定；  （二）筹集基金资金；  （三）管理基金资金，组织开展基金的有偿使用和理财活动；  （四）编制并组织实施基金的年度财务收支预算与决算；  （五）监督管理基金所支持项目的运行；  （六）向基金审核理事会报告基金的重大业务事项；  （七）开展其他符合基金宗旨的活动  **第三章 基金筹集**  **第九条** 基金来源包括：  （一）通过清洁发展机制项目转让温室气体减排量所获得收入中属于国家所有的部分；  （二）基金运营收入；  （三）国内外机构、组织和个人捐赠  （四）其他来源。  **第十条**本办法所称减排量，是指经国家批准，通过清洁发展机制项目转让的温室气体减排量；减排量收入，是指转让减排量所获得的收入。  减排量收入由国家和实施清洁发展机制项目的企业（以下称项目业主）按照规定的比例分别所有。减排量收入中属于国家所有的部分（以下称国家收入）全额纳入基金。  **第十一条**国家收入由基金管理中心负责向项目业主或按减排量转让合同约定向减排量购买方收取。  项目业主应当在取得减排量收入后的15个工作日内，按照规定比例向指定账户支付国家收入。  **第十二条**国家收入应当以减排量转让合同约定的币种取得。  减排量转让合同约定以外币支付，但确需以人民币支付国家收入的，经基金管理中心同意，项目业主应当在取得收入后的15个工作日内以人民币支付，汇率以结汇日现汇买入价为准。  **第十三条**减排量转让合同由项目业主和减排量购买方签订。  项目业主应当在减排量转让合同生效后15个工作日内，将合同副本、营业执照复印件、合同双方联系人及联系方式报基金管理中心备案。  备案事项发生变更的，项目业主应当自变更之日起15个工作日内告知基金管理中心。  **第十四条**项目业主缓缴、少缴、不缴国家收入的，由财政部、国家发展改革委依据有关规定予以处理、处罚。  **第四章 基金使用**  **第十五条**基金使用采取赠款、有偿使用等方式。  基金通过赠款方式支持有利于加强应对气候变化能力建设和提高公众应对气候变化意识的相关活动。  基金通过有偿使用方式支持有利于产生应对气候变化效益的产业活动。  基金通过银行存款、购买国债、金融债、企业债等形式开展理财活动。  **第十六条**基金支出包括业务支出和基础管理费支出。  业务支出包括赠款支出和有偿使用项目开发费用支出。  基金赠款年度支出规模根据国家应对气候变化实际工作需要确定。  本办法所称有偿使用项目开发费用，是指基金有偿使用项目筛选、调查、评审、立项过程中发生的费用。有偿使用项目开发费用按照项目使用金额的一定比例提取。  本办法所称基础管理费支出，是指基金筹集、管理、使用过程中的日常管理费用，包括清洁发展机制项目日常管理费用。基础管理费支出按照基金上年末资产净值的一定比例提取。  有偿使用项目开发费用和基础管理费支出的具体提取比例由基金审核理事会另行规定。  **第十七条**基金管理中心应当对基金使用进行风险控制。  基金不得用于不符合其宗旨的赞助和捐赠支出，不得从事股票、股票类投资基金、房地产以及期货等金融衍生产品投资。  **第十八条**基金与基金管理中心财务应当分别建账，分别核算，实行预决算管理。  财政部负责制定基金财务管理办法，并对基金使用情况和会计记录进行监督检查。  **第五章 赠款项目管理**  **第十九条**赠款主要用于支持下列事项：  （一）与应对气候变化相关的政策研究和学术活动；  （二）与应对气候变化相关的国际合作活动；  （三）旨在加强应对气候变化能力建设的培训活动；  （四）旨在提高公众应对气候变化意识的宣传、教育活动；  （五）服务于基金宗旨的其他事项。  **第二十条**赠款项目申请人应当是我国境内从事应对气候变化领域工作，具有一定研究或者培训能力的相关机构。  **第二十一条**申请赠款应当提交项目申请书。赠款项目申请书包括以下内容：  　　（一）申请人基本情况；  　　（二）项目背景资料；  　　（三）项目目标；  　　（四）项目的主要内容与活动；  　　（五）项目的主要产出；  　　（六）项目的执行进度安排；  　　（七）申请资金额和预算安排；  　　（八）其他相关内容。  **第二十二条**赠款项目申请书由国务院有关部门或者省级发展改革部门（以下称项目组织申报单位）向国家发展改革委转报或报送。  **第二十三条**国家发展改革委负责组织赠款项目的评审。  赠款项目的评审结果报基金审核理事会审核并取得一致意见后，由国家发展改革委、财政部批准。  **第二十四条**赠款项目由项目组织申报单位组织实施。  **第二十五条**赠款项目实行合同管理，在合同中明确规定各方责任、权利、义务和违约处罚办法。  赠款项目合同由国家发展改革委、项目组织申报单位、基金管理中心、赠款项目申请人共同签订。  **第二十六条**国家发展改革委、基金管理中心会同项目组织申报单位负责对赠款项目的实施进行监督检查和考核验收。国家发展改革委、财政部对违规行为予以处理、处罚。  **第二十七条**赠款项目形成研究或者其他成果的，有关权益归属在赠款项目合同中约定。  **第六章 有偿使用项目管理**  **第二十八条**基金有偿使用采取以下方式：  （一）股权投资；  （二）委托贷款；  （三）融资性担保；  （四）国家批准的其他方式。  基金以股权投资、委托贷款方式支持项目的，其年度累积金额不得超过上年末资产净值的一定比例。具体比例由基金审核理事会另行规定。  基金以股权投资方式支持项目的，不得对投资对象控股，投资所形成股权的退出，应当按照公开、公平和市场化原则，确定退出方式及退出价格。  基金以融资担保方式支持项目的，其担保额不得超过基金年度预算确定的限额。  **第二十九条**有偿使用项目申请人应当是我国境内从事减缓、适应气候变化相关领域业务的中资企业、中资控股企业。  **第三十条**有偿使用项目申请人应当向基金管理中心提交申请文件。申请文件包括以下内容：  　　（一）项目申请书：  　　（二）项目可行性研究报告；  　　（三）企业近3年经营状况；  　　（四）企业营业执照副本；  　　（五）其他相关材料。  **第三十一条**基金管理中心负责组织对基金有偿使用项目的遴选、评审。  属于重大项目的，应当报经基金审核理事会审核并取得一致意见后，由国家发展改革委、财政部批准；属于非重大项目的，由基金管理中心按照规定程序审批，并于批准后的15个工作日内报国家发展改革委、财政部备案。  前款所称重大项目是指单个项目申请基金资金在7000万元人民币以上（含7000万元）的有偿使用项目。  **第三十二条**按照国家有关投资管理规定，应当办理项目审批、核准或者备案手续的，从其规定。  在项目未获得审批、核准或者备案前，基金不得为项目提供资金。  **第三十三条**基金管理中心负责有偿使用项目的组织实施、监督检查和考核验收  基金有偿使用形成的各种资产及权益应当按照国家有关财务规章制度进行管理  **第七章 附 则**  **第三十四条**基金及其管理中心应当接受国家审计机关依法实施的审计监督。  **第三十五条**经基金审核理事会批准，基金管理中心可以聘请社会审计机构对基金收支规模、基金结余、基金运行情况以及基金管理中心的支出情况进行审计。  **第三十六条**本办法自发布之日起施行 |